

# 입학전형 공정관리 규정

제정 2018. 04. 01.

개정 2023. 01.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심층면접 평가 등 입학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대상 서류는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여 심사한다.

② 입학전형의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척·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격조치한다. 다만, 직업명, 직장명 등을 광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감점조치한다.

④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출신대학교 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시에 감점 조치한다.

제3조 (심층면접) 심층면접 평가위원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 면접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무자료 면접으로 진행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 ① 서류심사 위원, 심층면접평가 위원, 입학전형위원회, 입시공정관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평가, 심의, 의결(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입학전형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입학전형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심의의결을 한다.

제5조 (위원의 기피) 입학전형의 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평가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위원의 회피) 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의 평가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서약서 제출)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서류심사 위원, 심층면접평가 위원, 입학전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척, 기피, 회피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존기간) ① 연도별 입학전형 자료 일체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입학자의 입학학년도 3월 1일로 한다.

③ 이후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되는 원본서류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1. 19.)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개정 2023.0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